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 관련 판단*

박희찬 김혜숙†
동국대학교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각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 1에서는 519명의 사람들에게 여러 유형의 주요 범죄에 대해 그 인구학적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범죄의 유형(즉 살인, 폭력, 성범죄, 강도, 절도, 사기, 횡령, 조직폭력범죄)에 따라 범죄자의 특성(즉 성별, 교육, 지위, 도농, 인종, 사회경제적 계층, 지역)을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1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인종고정관념적 특성에 대해 절도범죄는 동남아노동자가 한국인보다 더 많이 저지른다고 평가하였고 사기범죄는 한국인이 동남아노동자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음을 밝혔다.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범죄 유형(사기 대 절도)과 인종특성(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을 스크립트를 통해 제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귀인과 처벌관련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한국인의 고정관념적 범죄인 사기범죄에 대해서 동남아노동자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보다 더욱 내부적·지속적·안정적 요인에 의한 행동이라고 귀인하였다. 또한 남성 응답자는 예상대로 동남아노동자의 절도범죄에 대해 한국인의 동일 범죄에 대해서보다 재범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고, 반면 한국인의 사기범죄를 동남아노동자의 동일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보다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예상대로 고정관념 일치범죄에 대해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각한 것은 내부귀인에 의해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이론적·실제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범죄자, 고정관념, 처벌판단, 범죄유형, 인종

사람들은 범죄 혹은 범죄자의 특징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대나 신념-즉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은행강도의 특징을 ‘영리하고 쾌활하며 능숙한 사람’이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횡령범에 대해서는 ‘장년층, 다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여 신뢰받는 직원’이라고 지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람들이 범죄자의 특징에 대해 가지는 신념은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 은행강도의 특징은 젊은이, 충동적, 약물중독의 사람이었고(Associated Press, 1986), 또한 실제 횡령범 특징은 26세, 최저임금을 받는 고졸의 기혼여성, 입사 1년 미만이었다(Pogrebin, Poole, & Regoli, 1986).

* 본 논문은 박희찬의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

† 교신저자: 김혜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전공 443-749
Email: hsk@ajou.ac.kr

이와 같이 사람들은 범죄자의 특성에 대해 (흔히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은 사람들이 범죄자의 범죄행동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범죄자 혹은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 Bodenhausen과 Wyer(1985)는 위반행동과 범죄행동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인종고정관념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1에서 남성 직장인의 이름을 전형적인 미국인과 전형적인 아랍인으로 구분하고, 위반행동을 상사에 반항하는 행동과 게으른 행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후 평가하도록 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직장상사에 반항하는 위반행동은 미국인의 고정관념적 행동이었고 게으름은 아랍인 고정관념적 행동으로 지각되었다. 실험 결과, 위반행동을 한 사람의 국적이 고정관념과 일치할 때(즉, 미국인의 직장상사에 반항하는 행동; 아랍인의 게으른 행동) 불일치할 때보다 더욱 내적인 요인(즉, 성격이나 기질)에 의해 일어나서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더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2에서는 범죄행동에 대한 처벌판단에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사전 조사에서, 백인 고정관념 범죄는 횡령으로, 히스패닉 고정관념 범죄는 폭력으로 사람들이 지각하였는데, 사람들은 범죄자의 이름만으로도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범죄 행위를 연상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이름이 Carlos Ramirez라고 하면 히스패닉으로 지각하여 폭력범죄에 더 연관시킬 것이고 Robert Johnson이라고 하면 전형적인 백인으로 지각하여 횡령범죄에 연관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연구 결과, 예상대로 사람들은 범죄자의 이름과 일치하는 고정관념 범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보다 더 높은 처벌을 결정했으며 또한 가석방을 덜 허용하도록 평가하였다. 이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적 범죄에 대해 보다 안정적 지속적 특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더 엄격하게 판결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대상이 고정관념에 의해 기대된 행동을 하면 기대되지 않은 행동을 할 때와 달리 그 행동을 대상의 성격이나 기질적 특성

에 의한 것으로 더욱 지각하므로 그 결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일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재범가능성을 높게 지각하게 되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Gordon, Bindrim, McNicholas와 Walden(1988)은 피고 인종(흑인 대 백인)과 범죄유형(Bule-collar범죄 대 White-collar범죄)을 조작하여 인종 일치 범죄에 대한 지각이 피고의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구속기간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종과 범죄유형간 상호작용이 있었다. 즉, 강도 범죄(즉, 흑인고정관념적 범죄)의 경우 흑인피고를 백인피고보다 더 오래 구속해야 한다고 평가했고 반면 횡령범죄(즉, 백인고정관념적 범죄)에 대해서는 백인피고를 흑인피고보다 더 오래 구속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고정관념 일치범죄는 더욱 안정적이고 내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귀인하고 그에 따라 더 높은 처벌판단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범죄 혹은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범죄행동의 원인에 대한 귀인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러한 귀인이 지각자의 범죄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Hoffman, 1980). 고정관념이 '어떠한 대상의 행동을 어떻게 귀인하는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실상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 과정에 대한 연구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행동에 대한 원인귀인과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검토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Crocker, Hannah & Weber, 1983; Fiske & Taylor, 1991; Fiske, 1998; Hamilton & Trolier, 1987).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대상의 행동이 대상이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에는(즉, 기대일치 행동) 그렇지 않은 경우(즉, 기대불일치 행동)에 비해 더욱 내부·안정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고 이에 따라 이러한 행동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기대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 연구들 중에는 김혜숙(1993)이 지역고정관념이 대상인물의 행동에 대한 원인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인상평가가 더욱 극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동일한 행동정보(즉, 성급한 혹은 자기주장

적)를 보여주고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영남, 또는 호남출신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대상인물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 귀인하도록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대상의 행동이 지역고정관념 일치 행동이면 불일치 행동의 경우에 비해 이를 더욱 내부적, 안정적 원인에 의한 행동으로 귀인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행동원인에 대한 귀인판단에 있어 영남출신 대상인물이 영남 고정관념적인 행동(즉, 성급한 행동)을 했을 때 호남출신 대상인물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덜 외적으로 귀인하며 앞으로의 행동변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호남 고정관념적 행동(즉, 자기주장적 행동)에 대해서는 대상이 호남사람인 경우 더 안정된 행동으로 지각하였고 덜 바람직한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범죄행동이 그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혹은 기대)과 일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내부 기질적·안정적·지속적 원인에 의한 행동으로 귀인하고 그에 따라 더욱 엄격한 판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Bodenhausen & Wyer, 1985). 즉,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의해 기대된 범죄 행동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동하는 사람의 성격에 의한 당연한 행동으로 더욱 생각할 것이다, 또한 범죄행동을 피고의 내적(기질적)특성으로 귀인하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할 것이고, 반면 외적(상황적)원인에 대한 추론이 가능해 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관대한 판결과 선고를 보이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범죄 혹은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현재까지 없으며 더욱이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판단 혹은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현재까지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째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범죄(혹은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동일한 범죄행동을 저지르더라도 사람들은 그가 속한 집단 범주에 대한 범죄관련 고정관념을 적용하여 다른 해석 혹은 귀인을 하는데, 고정관념 일치 범죄는 불일치 범죄보다 내적 성격적귀인, 더 지속적인 안정적 귀인을 하여 재범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그에 따라 더 엄격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연구 1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범죄(혹은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지각, 혹은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요 범죄의 유형과 범죄자의 인구학적 특성(즉, 성,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고정관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는 현재 우리 학계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학술적·현실적 의미를 가진다.

연구2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종(즉, 한국인 대 동남아 노동자) 고정관념적 지각이 처벌관련 판단(예를 들어 재범가능성,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연구 2).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Bodenhausen 등(1985)과 Gordon 등(1988)의 연구 모델에 따라, 실험을 통해 한국인의 전형적인 범죄와 동남아노동자의 전형적인 범죄에 대해 인종고정관념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행위의 스크립트를 인종(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과 범죄유형(동남아노동자 고정관념 일치범죄 대 한국인 고정관념 일치범죄) 차원에서 변화시켜 제시하여, 인종 고정관념 일치범죄와 불일치 범죄에 대해 판결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은 인종일치 범죄에 대해 인종불일치 범죄보다 더욱 내부 지속원인으로 귀인하여 더욱 엄격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동남아노동자 고정관념 일치범죄를 저지른 동남아 노동자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보다 더 엄하게 판결할 것이며, 한국인 고정관념 일치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같은 범죄를 저지른 동남아노동자보다 더 엄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를 검토하였다(연구 2).

본 연구 2에서는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경로 분석(path analysis: Baron & Kenny, 1986)을 실시하여 본 논문에서 상정한 매개과정 -범죄행동의 고정관념 일치여부--> 귀인--> 관련 판단- 을 보다 세밀히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로 분석 방법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분석방법보다 진일보하고 적합한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고정관념 일치 여부에 따른 귀인 차이와 판단 차이를 각각 변량분석으로 분석하고 또한 귀인과 판단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러한 연구들에서 상정한, 고정관념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귀인이 매개한다고 보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개 과정을 보다 적절히 분석하는 방법인 경로 분석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 범죄 유형별로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특정한 신념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범죄의 유형과 범죄자의 범주 특성에 따른 지각 혹은 고정관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범죄유형은 살인, 폭력, 성범죄, 강도, 절도, 사기, 횡령, 조직폭력의 8개로 구분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범죄유형이다. 이에 대한 7차원에서의 범죄자 지각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7차원의 범주는 우리 사회의 다수집단과 소수집단들로 사회갈등에 관련되어 있는 집단들(성별, 지역)이거나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양극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집단(교육, 지위, 도농, 계층)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인종집단(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이다. 따라서 연구 1에서 검토한 연구 문제는 각 범죄유형별로 그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을 검토하고 또한, 이러한 지각이 응답자의 성별 그리고 대학생 일반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방법 및 절차

참여자

본 조사연구에서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524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자 5명을 제외한 총 5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 중에서 일반인은 경기도 내 00대학교 특수대학원(즉,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과 평생교육원 수강생 248명(남자: 98명, 여자: 150명)이고, 학생은 경기도 내 00대학교와 서울의 00대학교 학부생 271명(남자: 117명, 여자: 154명)을 대

상으로 했다. 대학생의 나이는 20대가 대다수(91%)였으며, 일반인은 30대(33.9%)와 40대(32.3%)가 비슷한 정도로 제일 많았다.

절차

연구자는 조사 대상자들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일반인들은 평생교육원과 특수대학원 강의 시간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은 각 지역의 대학에서 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0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1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과 응답내용은 비밀보장 및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지시문이 기술되었다. 응답자들은 연구를 소개하는 글을 읽고 조사에 참여하였다. 2쪽부터 9쪽까지는 8가지 범죄유형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8개의 범죄유형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강력사건 위주로 구성되었다. 그 범죄 유형은 살인, 폭력, 성범죄,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및 조직폭력 범죄이다. 이에 대한 7차원에서의 범죄자 특성에 대한 지각 혹은 고정관념을 알아보았다. 7차원의 주요 인구학적 평가 차원은 성별, 지역, 교육, 지위, 도농, 계층 그리고 인종집단이었다. 7차원의 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성별(남 대 여), 교육(낮음 대 높음), 지위(낮음 대 높음), 도농(도시 대 농촌), 인종(한국인 대 동남아노동자), 계층(가난 대 부자 대 중산층), 지역(서울수도권 대 전라도 대 경상도 대 충청도)이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8개의 범죄유형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인범죄(폭력, 성범죄, 강도, 절도, 사기, 횡령, 조직폭력)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7차원의 집단범주인 성별(남 대 여), 교육(낮음 대 높음), 지위(낮음 대 높음), 도농(도시 대 농촌), 인종(한국인 대 동남아노동자), 계층(가난 대 부자 대 중산층), 지역(서울 수도권 대 전라도 대 경상도 대 충청도)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은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범주순서는 무선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범주집단(예를 들어, 남자 혹은 여자)이 각 질문에 해당하는 범죄를 얼마나 저지른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거의 없다

4=매우 많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자 전체문항에서 절반가량의 문항은 평정척도를 역 문항(1=매우 많다 4=거의 없다)으로 제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자신의 성별, 고학, 대학생 여부, 나이, 직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논의

표 1에 전체 응답자가 각 범죄에 대해 지각한 범주특성별 평균과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살인범죄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저지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비슷하게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도시에서 농촌에서보다, 한국인이 동남아노동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혹은 중산층보다, 서울수도권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보다 더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다. 폭력범죄에 대한 지각은 살인범죄유형에 대한 지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행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M=2.43)과 지위가 높은 사람(M=2.48)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t(518)=-1.21, p>.10$), 사회경제적 계층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없었다($F(1,518)=2.016, p>.10$). 그 외에는 살인, 폭력범죄유형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도범죄에 대해서는 살인, 폭력범죄 유형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인종에 대한 평가에서 동남아노동자(M=2.44)가 한국인(M=2.37)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고 ($t(518)=-1.91, p<.06$), 그 외에는 살인, 폭력, 강도범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M=2.74)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M=1.98)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고($t(518)=-14.97, p<.01$), 지위가 높은 사람(M=2.60)이 지위가 낮은 사람(M=2.18)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

표 1. 전체 응답자가 각 범죄에 대해 지각한 대상특성별 평균, 표준편차 및 통계분석 결과

대상	살인		폭력		성폭행		강도		절도		사기		횡령		조직폭력	
	t	df	t	df	t	df	t	df								
남성	2.66	0.79	2.93	0.68	3.17	0.79	2.89	0.70	2.70	0.73	2.79	0.70	2.84	0.72	3.15	0.77
여성	1.75	0.57	1.71	0.63	1.51	0.63	1.73	0.64	2.06	0.65	15.73**	518	2.43	0.72	19.46**	518
교육낮음	2.57	0.73	2.72	0.66	2.68	0.73	2.72	0.68	2.61	0.71	1.98	0.72	1.83	0.69	2.99	0.75
교육높음	1.95	0.63	1.93	0.61	2.29	0.67	1.77	0.68	1.76	0.63	2.74	0.61	2.90	0.61	1.92	0.70
지위낮음	2.44	0.68	2.50	0.72	2.43	0.65	2.46	0.66	2.52	0.73	2.18	0.67	1.91	0.69	2.49	0.79
지위높음	2.03	0.66	2.02	0.69	2.48	0.77	1.72	0.72	1.63	0.64	2.60	0.61	3.10	0.83	2.08	0.83
도시	2.69	0.67	2.73	0.69	2.83	0.71	2.83	0.70	2.78	0.77	2.94	0.77	3.06	0.80	2.83	0.78
농촌	1.67	0.66	1.91	0.67	1.95	0.67	1.83	0.66	1.91	0.66	1.89	0.70	1.72	0.63	1.82	0.66
한국인	2.43	0.68	2.53	0.67	2.58	0.70	2.40	0.63	2.37	0.64	2.66	0.72	2.74	0.75	2.60	0.71
동남아노동자	1.99	0.70	2.18	0.76	2.07	0.71	2.22	0.67	2.44	0.76	-1.91*	518	1.76	0.72	1.81	0.73
	F	df	F	df	F	df	F	df								
가난한사람	2.67	0.77	2.51	0.70	2.30	0.69	2.70	0.71	2.76	0.70	2.03	0.69	1.86	0.75	2.47	0.75
부자	1.94	0.69	2.04	0.66	2.44	0.75	2.02	1	1.64	0.68	352.76**	1	2.50	0.80	112.83**	1
중산층	1.91	0.62	2.04	0.58	2.25	0.62	1.95	0.62	1.88	0.62	2.47	0.68	2.38	0.65	1.92	0.61
서울수도권	2.78	0.72	2.74	0.73	2.86	0.73	2.76	0.75	2.75	0.77	3.01	0.77	3.06	0.78	2.83	0.75
전라도	2.20	0.76	2.38	0.73	2.14	0.66	2.14	0.65	2.10	0.63	2.18	0.66	2.14	0.67	2.56	0.81
경상도	2.06	0.61	2.27	0.66	2.10	0.60	2.07	0.61	2.05	0.58	700.99**	1	2.09	0.66	2.38	0.79
충청도	1.78	0.56	1.94	0.57	1.96	0.58	1.91	0.54	1.91	0.52	1.91	0.57	1.95	0.56	1.96	0.61

주)
 1. **p<.01 *p<.05
 2. N=519
 3. 평가는4점척도

하였다($t(518)=-8.88, p<.01$). 또한 부자($M=2.50$) 혹은 중산층에서($M=2.47$) 가난한 사람에서($M=2.03$)보다 사기 범죄를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다($F(1,518)=112.83, p<.01$). 사기범죄에 대한 그 외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지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도시에서 농촌에서보다, 한국인이 동남아노동자보다, 서울수도권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다.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사기범죄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M=2.90$)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M=1.83$)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고($t(518)=-21.2, p<.01$), 지위가 높은 사람($M=3.10$)이 지위가 낮은 사람($M=1.91$)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다($t(518)=-22.78, p<.01$). 또한 부자($M=3.03$) 혹은 중산층에서($M=2.38$) 가난한 사람에서($M=1.86$)보다 사기범죄를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다($F(1,518)=158.65, p<.01$). 횡령범죄에 대한 그 외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지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도시에서 농촌에서보다, 한국인이 동남아노동자보다, 서울수도권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보다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였다. 조직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살인, 폭력, 강도범죄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도시에서 농촌에서보다, 한국인이 동남아노동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혹은 중산층보다, 서울수도권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보다 더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 특성별 범죄에 대한 지각을 검토해보았다. 표 2에 남녀응답자가 지각한 대상의 범주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지각이 나타나 있다. 8유형의 모든 범죄(살인, 폭력, 성폭행, 강도, 절도, 사기, 횡령, 조직폭력)에 대해 남자응답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살인과 절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남녀 응답자와 남녀 대상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남녀 응답자 모두 남자대상이 여자대상보다 범죄를 더욱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는데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더욱 그렇게 지각함을 보여준다. 교육수준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사기와 횡령범죄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고 그 외의 범죄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성폭

행 범죄에 대해서는 남녀 응답자 모두 지위 높은 대상과 지위 낮은 대상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없었다. 살인 범죄에서 남녀 응답자 모두 지위가 낮은 대상이 지위가 높은 대상보다 살인범죄를 더욱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는데 여자응답자에서 남자응답자에서보다 지위에 따른 차이를 더욱 크게 지각하였다. 횡령범죄에서 지위가 높은 대상이 지위가 낮은 대상보다 범죄를 더욱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는데 여자응답자에서 남자응답자에서보다 차이를 더욱 크게 지각하였다. 도농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남녀 응답자 모두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고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도농에 따른 차이를 더욱 크게 지각하였다. 인종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절도범죄에 대해 남녀 응답자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자응답자는 동남아노동자가 한국인보다 절도범죄가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여자응답자는 한국인과 동남아노동자에 대해 절도범죄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외의 모든 범죄에서 남녀 응답자 모두 한국인이 동남아노동자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사회경제적 계층에 대한 평가에서 살인, 폭력, 강도, 절도,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남녀 응답자 모두 가난한 사람이 부자 혹은 중산층 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반대로 사기와 횡령에서는 남녀 응답자 모두 부자 혹은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성폭행 범죄에서 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8유형의 모든 범죄에 대해 남녀 응답자는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순서로 평가하였고 모든 범죄에서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보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더욱 크게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분하여 범죄에 대해 지각하는 고정관념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일반인응답자는 남자응답자가 범죄에 대해 지각한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대학생응답자는 여자응답자가 범죄에 대해 지각한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 대학생응답자는 성별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8유형의 모든 범죄(살인, 폭력, 성폭행, 강도, 절도, 사기, 횡령, 조직폭력)에 남성 대상이 여성대상보다 더 높다고 평가했으며 절도, 사기, 횡령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일반인·대학생 응답자와 남녀 대상간 상호작용이 나타

표 2. 남녀응답자가 지각한 대상의 범주특성에 따른 범죄 지각

응답자 성별 -대상의 범주특성	살인	폭력	성폭행	강도	절도	사기	횡령	조직폭력
남자응답자남성대상평가	2.53 (0.78)	2.80 (0.72)	2.93 (0.84)	2.71 (0.72)	2.61 (0.75)	2.65 (0.73)	2.71 (0.75)	2.96 (0.79)
남자응답자여성대상평가	1.69 (0.61)	1.76 (0.67)	1.60 (0.70)	1.75 (0.67)	2.05 (0.69)	2.37 (0.79)	2.23 (0.71)	1.63 (0.63)
평균	2.11 (0.69)	2.28 (0.69)	2.27 (0.77)	2.23 (0.69)	2.33 (0.72)	2.51 (0.76)	2.47 (0.73)	2.30 (0.71)
여자응답자남성대상평가	2.76 (0.78)	3.02 (0.65)	3.35 (0.70)	3.02 (0.66)	2.77 (0.70)	2.89 (0.65)	2.93 (0.69)	3.28 (0.72)
여자응답자여성대상평가	1.79 (0.54)	1.68 (0.61)	1.44 (0.56)	1.71 (0.62)	2.07 (0.62)	2.47 (0.67)	2.10 (0.50)	1.66 (0.56)
평균	2.28 (0.66)	2.35 (0.63)	2.39 (0.63)	2.36 (0.64)	2.42 (0.66)	2.68 (0.66)	2.52 (0.59)	2.47 (0.64)
응답자성별(남,여)주효과	12.73**	2.95	8.24**	8.65**	3.88*	10.44**	1.06	16.53**
대상범주의 주효과	553.02**	866.28**	1382.89**	853.18**	231.95**	104.33**	351.72**	1273.97**
응답자 x 대상범주 상호작용	3.23	13.01**	44.02**	20.13**	2.97	4.61*	26.38**	12.61**
남자응답자교육낮을대상평가	2.49 (0.75)	2.68 (0.71)	2.57 (0.74)	2.62 (0.71)	2.60 (0.72)	1.97 (0.72)	1.88 (0.72)	2.88 (0.74)
남자응답자교육높을대상평가	1.93 (0.69)	1.86 (0.68)	2.28 (0.67)	1.82 (0.74)	1.77 (0.66)	2.73 (0.85)	2.84 (0.83)	1.93 (0.71)
평균	2.21 (0.72)	2.27 (0.69)	2.42 (0.71)	2.22 (0.72)	2.19 (0.69)	2.35 (0.79)	2.36 (0.78)	2.41 (0.73)
여자응답자교육낮을대상평가	2.62 (0.71)	2.76 (0.62)	2.76 (0.71)	2.80 (0.64)	2.61 (0.71)	1.99 (0.71)	1.79 (0.66)	3.06 (0.75)
여자응답자교육높을대상평가	1.96 (0.59)	1.98 (0.56)	2.31 (0.67)	1.74 (0.64)	1.74 (0.61)	2.75 (0.77)	2.94 (0.80)	1.90 (0.70)
평균	2.29 (0.65)	2.37 (0.59)	2.53 (0.69)	2.27 (0.64)	2.18 (0.66)	2.37 (0.74)	2.37 (0.73)	2.48 (0.72)
응답자성별(남,여)주효과	3.95*	5.94*	5.81*	1.41	0.04	0.23	0.01	2.75
대상범주의 주효과	186.10**	411.26**	80.16**	479.00**	418.78**	217.71**	424.67**	491.70**
응답자 x 대상범주 상호작용	1.13	0.29	4.11*	8.93**	0.24	0.01	3.67*	4.98*
남자응답자지위낮을대상평가	2.33 (0.69)	2.40 (0.74)	2.32 (0.64)	2.43 (0.67)	2.53 (0.75)	2.10 (0.68)	1.95 (0.76)	2.49 (0.84)
남자응답자지위높을대상평가	2.01 (0.71)	1.98 (0.75)	2.40 (0.80)	1.73 (0.79)	1.66 (0.73)	2.61 (0.85)	2.98 (0.85)	2.05 (0.85)
평균	2.17 (0.70)	2.19 (0.75)	2.36 (0.72)	2.08 (0.73)	2.09 (0.74)	2.36 (0.76)	2.47 (0.80)	2.27 (0.85)
여자응답자지위낮을대상평가	2.52 (0.65)	2.57 (0.70)	2.51 (0.64)	2.48 (0.65)	2.51 (0.72)	2.24 (0.65)	1.87 (0.63)	2.48 (0.76)
여자응답자지위높을대상평가	2.04 (0.62)	2.05 (0.65)	2.54 (0.75)	1.71 (0.68)	1.61 (0.58)	2.60 (0.79)	3.19 (0.82)	2.11 (0.82)
평균	2.28 (0.64)	2.31 (0.67)	2.53 (0.70)	2.09 (0.67)	2.06 (0.65)	2.42 (0.72)	2.53 (0.73)	2.30 (0.79)
응답자성별(남,여)주효과	7.84**	6.83**	12.64**	0.11	0.54	1.70	2.29	0.30
대상범주의 주효과	87.45**	115.50**	1.71	292.13**	405.70**	81.64**	488.93**	56.21**
응답자 x 대상범주 상호작용	3.71*	1.36	0.47	0.64	0.13	2.66	7.65**	0.33
남자응답자도시대상평가	2.62 (0.74)	2.67 (0.79)	2.74 (0.72)	2.72 (0.71)	2.67 (0.78)	2.83 (0.83)	2.92 (0.83)	2.79 (0.81)
남자응답자농촌대상평가	1.61 (0.67)	1.84 (0.65)	1.89 (0.63)	1.82 (0.64)	1.87 (0.65)	1.90 (0.71)	1.80 (0.68)	1.87 (0.65)
평균	2.12 (0.70)	2.25 (0.72)	2.32 (0.67)	2.27 (0.67)	2.27 (0.72)	2.37 (0.77)	2.36 (0.75)	2.33 (0.73)
여자응답자도시대상평가	2.74 (0.62)	2.78 (0.61)	2.89 (0.69)	2.91 (0.68)	2.85 (0.75)	3.01 (0.72)	3.15 (0.76)	2.86 (0.75)
여자응답자농촌대상평가	1.71 (0.65)	1.95 (0.67)	1.99 (0.69)	1.84 (0.68)	1.93 (0.67)	1.88 (0.70)	1.67 (0.59)	1.78 (0.66)
평균	2.23 (0.63)	2.37 (0.64)	2.44 (0.69)	2.38 (0.68)	2.39 (0.71)	2.44 (0.71)	2.41 (0.67)	2.32 (0.70)
응답자성별(남,여)주효과	2.87**	3.14**	3.66**	2.79**	3.35**	1.42	0.65	0.02
대상범주의 주효과	591.27**	383.56**	457.87*	529.53**	381.34**	522.49**	791.71**	504.05**
응답자 x 대상범주 상호작용	0.03	0	0.33	4.41*	1.98	5.13*	16.51**	3.03
남자응답자한국인대상평가	2.32 (0.71)	2.44 (0.72)	2.42 (0.71)	2.30 (0.67)	2.24 (0.61)	2.55 (0.77)	2.64 (0.80)	2.55 (0.77)
남자응답자동남아대상평가	2.00 (0.74)	2.16 (0.76)	2.03 (0.72)	2.23 (0.68)	2.42 (0.77)	1.82 (0.75)	1.77 (0.75)	1.87 (0.79)
평균	2.16 (0.72)	2.30 (0.74)	2.22 (0.72)	2.27 (0.68)	2.33 (0.69)	2.18 (0.76)	2.20 (0.77)	2.21 (0.78)
여자응답자한국인대상평가	2.52 (0.65)	2.59 (0.63)	2.65 (0.68)	2.47 (0.60)	2.46 (0.64)	2.74 (0.68)	2.80 (0.70)	2.64 (0.67)
여자응답자동남아대상평가	1.99 (0.67)	2.19 (0.76)	2.10 (0.71)	2.21 (0.66)	2.45 (0.75)	1.73 (0.70)	1.58 (0.63)	1.76 (0.69)
평균	2.25 (0.66)	2.39 (0.69)	2.38 (0.69)	2.34 (0.63)	2.46 (0.69)	2.23 (0.69)	2.19 (0.67)	2.20 (0.68)
응답자성별(남,여)주효과	4.37*	3.28	10.59**	2.63	6.95**	1.27	0.11	0.02
대상범주의 주효과	119.31**	69.64**	133.39**	20.30**	5.28*	350.68**	482.18**	364.70**
응답자 x 대상범주 상호작용	6.84*	2.05	3.93*	6.75**	5.67*	9.24**	13.36**	5.49*

표 2계속.

응답자 성-대상의 범주특성	살인	폭력	성폭행	강도	절도	사기	횡령	조직폭력
남자응답자가난한사람평가	2.62 (0.81)	2.45 (0.68)	2.28 (0.68)	2.62 (0.72)	2.73 (0.72)	2.06 (0.72)	1.93 (0.78)	2.52 (0.75)
남자응답자부자대상평가	1.91 (0.74)	1.97 (0.71)	2.40 (0.79)	1.72 (0.70)	1.68 (0.72)	2.56 (0.85)	2.93 (0.90)	2.04 (0.86)
남자응답자중산층대상평가	1.94 (0.65)	2.09 (0.59)	2.22 (0.64)	2.03 (0.66)	1.94 (0.66)	2.44 (0.71)	2.39 (0.68)	1.94 (0.66)
평균	2.16 (0.73)	2.17 (0.66)	2.30 (0.70)	2.12 (0.69)	2.12 (0.70)	2.35 (0.76)	2.42 (0.79)	2.17 (0.76)
여자응답자가난한사람평가	2.70 (0.74)	2.55 (0.71)	2.32 (0.70)	2.76 (0.70)	2.78 (0.69)	2.01 (0.67)	1.81 (0.72)	2.44 (0.74)
여자응답자부자대상평가	1.97 (0.64)	2.09 (0.62)	2.47 (0.73)	1.58 (0.66)	1.55 (0.59)	2.46 (0.77)	3.10 (0.82)	2.13 (0.80)
여자응답자중산층대상평가	1.89 (0.60)	2.00 (0.57)	2.28 (0.61)	1.89 (0.60)	1.85 (0.58)	2.49 (0.65)	2.38 (0.62)	1.90 (0.56)
평균	2.19 (0.62)	2.21 (0.63)	2.36 (0.68)	2.08 (0.65)	2.06 (0.62)	2.32 (0.70)	2.43 (0.72)	2.16 (0.70)
응답자성별(남,여)주효과	0.69	1.28	1.99	1.57	2.43	0.59	0.03	0.05
대상범주의 주효과	346.46**	130.89**	2.07	327.82**	500.26**	105.12**	148.42**	188.38**
응답자 x 대상범주 상호작용	2.53	6.00**	0.06	11.89**	3.37	1.62	1.91	0.25
남자응답자서술수도권평가	2.72 (0.80)	2.59 (0.80)	2.73 (0.79)	2.66 (0.79)	2.61 (0.76)	2.87 (0.82)	2.91 (0.85)	2.72 (0.77)
남자응답자전라도대상평가	2.19 (0.79)	2.44 (0.79)	2.20 (0.69)	2.16 (0.67)	2.14 (0.64)	2.21 (0.65)	2.16 (0.66)	2.63 (0.85)
남자응답자경상도대상평가	2.09 (0.68)	2.32 (0.72)	2.15 (0.60)	2.18 (0.69)	2.13 (0.62)	2.15 (0.68)	2.17 (0.69)	2.47 (0.86)
남자응답자충청도대상평가	1.81 (0.65)	1.98 (0.65)	2.03 (0.66)	1.99 (0.58)	1.99 (0.57)	1.95 (0.64)	2.01 (0.60)	2.03 (0.66)
평균	2.20 (0.73)	2.33 (0.74)	2.28 (0.69)	2.25 (0.68)	2.22 (0.65)	2.30 (0.70)	2.31 (0.70)	2.46 (0.78)
여자응답자서술수도권평가	2.82 (0.66)	2.85 (0.66)	2.96 (0.68)	2.83 (0.71)	2.85 (0.75)	3.10 (0.72)	3.17 (0.72)	2.92 (0.73)
여자응답자전라도대상평가	2.20 (0.74)	2.34 (0.68)	2.10 (0.64)	2.13 (0.63)	2.07 (0.63)	2.15 (0.67)	2.12 (0.67)	2.51 (0.78)
여자응답자경상도대상평가	2.04 (0.56)	2.24 (0.61)	2.07 (0.60)	1.99 (0.54)	2.00 (0.54)	2.01 (0.55)	2.04 (0.64)	2.32 (0.74)
여자응답자충청도대상평가	1.77 (0.48)	1.90 (0.51)	1.91 (0.51)	1.86 (0.49)	1.85 (0.48)	1.88 (0.51)	1.91 (0.52)	1.91 (0.57)
평균	2.21 (0.61)	2.33 (0.61)	2.26 (0.61)	2.20 (0.59)	2.19 (0.60)	2.29 (0.61)	2.31 (0.64)	2.41 (0.70)
응답자성별(남,여)주효과	0.03	0.00	0.26	1.31	0.41	0.09	0.01	1.07
대상범주의 주효과	683.68**	441.60**	585.03**	488.87**	445.87**	663.96**	683.32**	466.26**
응답자 x 대상범주 상호작용	4.71*	18.08**	21.58**	20.58**	26.29**	13.87**	22.86**	15.56**

주)

1. $p < .01$ ** $p < .05$ *

2. $N = 519$

남자: 215 여자: 304

3. 평가는 4점 척도

났다. 즉 이는 일반인·대학생 응답자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는데 대학생응답자가 일반인응답자보다 더욱 그렇게 지각함을 보여준다. 교육수준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사기와 횡령범죄는 일반인과 대학생 응답자 모두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고 그 외의 범죄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폭력, 성폭행, 강도, 조직폭력 범죄에서 일반인·대학생 응답자와 교육수준별 대상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 대학생 응답자

모두 해당범죄에 대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는데 대학생응답자가 일반인응답자보다 더욱 그렇게 지각함을 보여준다. 횡령범죄에서도 일반인·대학생 응답자와 교육수준별 대상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 대학생응답자 모두 횡령범죄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는데 대학생응답자가 일반인응답자보다 더욱 그렇게 지각함을 보여준다. 지위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살인, 폭력, 강도, 절도,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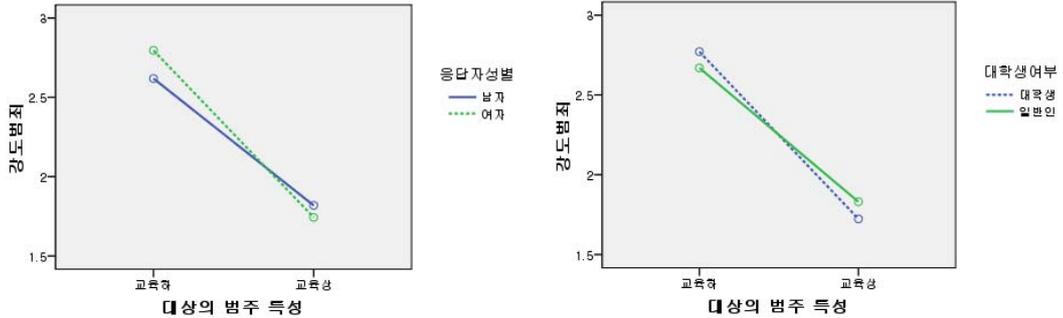


그림 1. 남녀응답자와 일반인·대학생응답자가 강도범죄에 대해 지각한 교육대상 범주 특성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반대로 사기와 횡령범죄에서는 일반인, 대학생 응답자 모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농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응답자는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인종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절도범죄에 대해 인종과 응답자 대학생여부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일반인응답자는 동남아노동자($M=2.45$)가 한국인($M=2.25$)보다 절도범죄가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절도범죄에 대해 대학생 응답자(한국인: $M=2.47$, 동남아노동자: $M=2.43$)는 인종에 의한 평가차이가 없었다. 그 외에 모든 범죄에서 한국인이 동남아노동자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계층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살인, 폭력, 강도, 절도, 조직 폭력에 대해 응답자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 혹은 중산층 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반대로 사기와 횡령에서 응답자는 부자 혹은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성폭행 범죄는 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8유형의 모든 범죄에 대해 응답자는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비슷하게 발생하며 충청도에서 가장 낮게 발생한다고 평가하였다.

표 2에 나타난 결과를 중요한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지각하는 범죄에 대한 특성과 응답자 특성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림 1은 남녀응답자와 일반인·대학생응답자가 강도범죄에 대해 교육대상의 범주 특성을 지각한 그래프이다. 그림 1을 보면 남녀응답자 모두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의 강도 범죄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의 강도범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지각의 경향성은 여자응답자에서 남자응답자에서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대학생·일반인응답자 모두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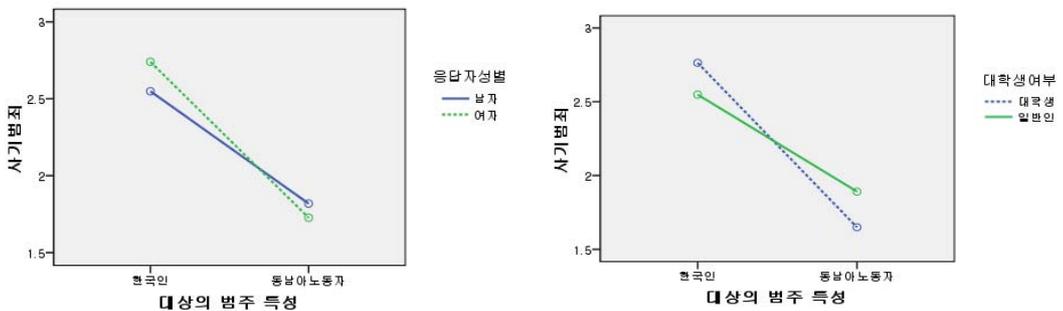


그림 2. 남녀응답자와 일반인·대학생응답자가 사기범죄에 대해 지각한 인종대상 범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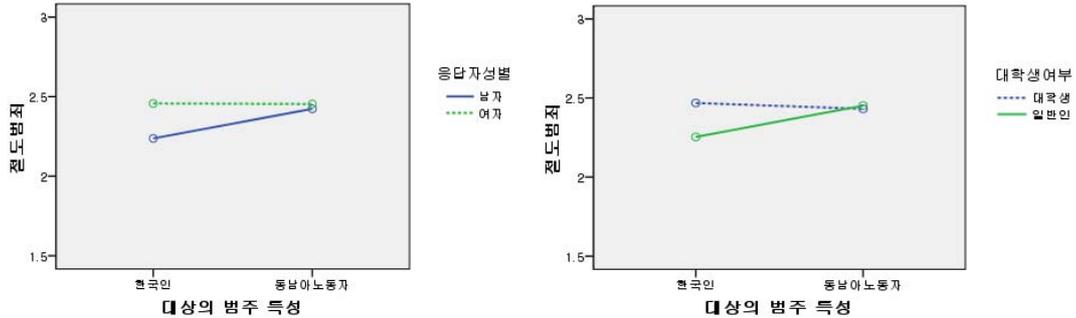


그림 3. 남녀응답자와 일반인·대학생응답자가 절도범죄에 대해 지각한 인종대상 범주 특성

의 강도범죄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의 강도범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평가경향은 대학생에서 일반인에서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평가경향은 살인, 폭력, 성폭행, 절도 및 조직폭력 등의 다른 범죄와 대상의 평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여자응답자에서 남자응답자보다, 대학생응답자에서 일반인응답자보다 더욱 뚜렷하였다. 반면에 사기와 횡령 범죄에서는 다른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2는 남녀 응답자와 일반인·대학생응답자가 사기범죄에 대해 인종대상의 범주 특성을 지각한 그래프이다. 그림 2를 보면 남녀응답자는 한국인의 사기 범죄가 동남아노동자의 사기범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여자응답자에 있어 남자응답자보다 더욱 뚜렷하였다. 또한 대학생 평가자에서 일반인 평가자에 있어서보다 이러한 인종에 다른 평가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부자 혹은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보다 사기범죄가 더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평가경향은 여자응답자에서 남자응답자에서보다, 대학생응답자에서 일반인응답자에서보다 더욱 뚜렷하였다. 반면에 절도범죄에 대해서 인종대상의 범주특성에 대한 지각에서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절도범죄에 대해 남자응답자는 동남아노동자가 한국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반해, 여자응답자는 인종의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비슷하게 절도 범죄에 대해 일반인응답자는 동남아노동자가 한국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반해, 대학생응답자는 인종의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연구 1은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확인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 연구로서 사람들은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자특성을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사람들이 특정 범죄자에 대해 공유하는 특정한 신념 혹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 1의 한계점은 응답자 수(N=519명)의 부족과 편의적 표집을 사용하였으므로 결과를 우리나라 사람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즉 연구 1은 서울, 경기지역의 사람들만 참여하였으므로 한국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지각 혹은 고정관념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 2

연구 1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범죄자에 대해 지각하는 특성 혹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 동남아노동자 범죄의 특성으로 지각하는 범죄가 절도 범죄이며, 반면에 한국인 고정관념적 범죄로 지각하고 있는 범죄가 사기 범죄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범죄유형(절도 대 사기)과 인종특성(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을 조작하여 인종고정관념 범죄 일치여부에 따른 모의재판 판결을 검토했다. 선행연구(Bodenhausen 등, 1985; Gordon 등, 1988)에서는 인종고정관념 일치범죄가 재범가능성이 더 높고 더 엄격한 판결을 받는다고 하였다. 범죄유형과 피고인종의 영향에 대한 Gordon 등 (1988)의 연구에서 백인의 인종 고정관념 일치범죄인 백인횡령범죄에는 흑인의 횡령범죄보다 더 긴 구속을 판결 하였고 흑인의 인종고정관념 일치범죄인 흑인강도

범죄에는 백인강도범죄보다 더 긴 구속판결을 하였다. 즉 인종고정관념 일치 범죄의 경우 행동을 피고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여 그 행동의 지속가능성과 재범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도록 하여 더 엄격한 판결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대상의 행동을 어떻게 귀인 하는가?’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김혜숙, 1993). 즉, 고정관념 일치 정보와 불일치 정보에 대해 귀인이 다르게 작용하여 사람들은 인종고정관념 일치범죄에 대해 불일치범죄에 대해서 보다 내적(지속적)원인에 의한 행동으로 더욱 귀인하고 그 결과, 재범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더 엄격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연구 1에서 남자응답자는 절도범죄를 동남아노동자(M=2.42)가 한국인(M=2.24)보다 더 저지를 것이라고 지각하였으나 여자응답자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M= 2.45 대 2.46). 이와 비슷하게 일반인응답자는 절도범죄에 대해 동남아노동자(M=2.45)가 한국인(M=2.25)보다 더 저지를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하지만 대학생응답자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M= 2.43 대 2.47). 따라서 연구2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여 이를 검토하였다. 즉, 연구 2에서는 범죄유형(절도 대 사기)과 범죄자 인종특성(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을 조작하여, 범죄유형에 대한 인종고정관념이 귀인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2에서는 또한, 앞서도 기술하였듯이 매개 분석을 통하여 범죄 행동의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가 범죄관련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한 귀인 과정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2의 구체적 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 가설

가설 1 : 사람들은 인종 고정관념일치 범죄(즉, 한국인의 사기범죄 혹은 동남아노동자의 절도범죄)를 불일치 범죄 혹은 통제 집단의 경우보다 더욱 내부·지속원인으로 귀인 할 것인데, 이는 주로 남자 응답자나 일반인 응답자에서 여자나 대학생 응답자에서보다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 사람들은 인종 고정관념일치 범죄(즉, 한국인의 사기범죄 혹은 동남아노동자의 절도범죄)에 대해 불일치 범죄 혹은 통제 집단의 경우보다 재범가능성 혹은 수감기간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인데, 이러한 경향성은 남자와 일반인 응답자가 여자 혹은 대학생 응답자보다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 남자 혹은 일반인 응답자가 인종고정관념일치 범죄에 대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관련 판단(즉, 재범가능성 혹은 수감기간)을 엄격하게 하는데, 이는 고정관념 일치 범죄가 불일치 범죄의 경우보다 더욱 내부 귀인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범죄행위의 인종고정관념 일치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내부 귀인에 의해 매개된다.

방법 및 절차

참여자 및 설계

총 26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 중에서 일반인은 111명(남자: 84명, 여자: 27명)이고, 대학생은 153명(남자: 69, 여자: 84명)이다. 일반인은 경기도 내 00대학교 특수대학원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대학생은 경기도 내 00대학교의 대학생들이었다. 대학생의 97%는 20대였고, 일반인은 82%가 30대와 40대였다. 실험설계는 남녀 응답자 유형의 경우는 2(범죄유형: 절도 대 사기) x 3(인종특성: 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 x 2(응답자 유형: 남 대 여)이었고, 또한 대학생-일반인 응답자 유형의 경우는 2(범죄유형: 절도 대 사기) x 3(인종특성: 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 x 2(응답자 유형: 대학생 대 일반인)이었다.

절차

연구자는 대학생에게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였고 일반인에게는 강의실에 들어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학생은 실험실에서 실험 1회당 약 12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실로 들어온 순서대로 자리에 앉았다. 그 후 각 조건의 스크립트를 사람

들에게 미리 정해진 조건에 의해 무선배정 하였다. 실험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에게 한 사람에 대한 짧은 신상정보를 보게 될 것이며 그 후, 그 사람의 범죄행동을 읽게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참여자들에게 범죄자의 특징과 범죄행동을 주의 깊게 읽은 뒤, 제시된 범죄자와 범죄행동에 대한 느낌에 따라 각 문항에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그 후 연구자는 실험이 모두 끝난 것을 확인한 후, 참여자들에게 실험에 참여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인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실험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도구(스크립트)

범죄자인종과 범죄유형에 따른 설계이므로 총 6개의 스크립트가 조작되었다. 스크립트에는 범죄자에 대한 짧은 신상정보(국적-통제조건에서는 제외, 남성, 나이)가 기술되어 있었다. 그 다음 각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행동을 기술하였다. 각 스크립트는 범죄자인종과 범죄유형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비슷하게 만들었다. 각 스크립트를 제시하고 종속측정을 위한 질문을 하였다(예를 들어, “귀하는 위 사람의 범죄행동이 얼마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도범죄 스크립트

동남아 노동자 라호만씨(혹은 노동자 김모씨 혹은 00씨)(남, 29세)는 어제 밤 절도죄로 체포되었다. 그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어제 오후 5시경 안산시 원곡동이 모(남, 35)씨의 집에서 라호만씨(혹은 김모씨 혹은 00씨)가 나가는 것을 한 이웃이 보았다. 집주인인 이 모씨가 외출하였다가 밤 9시 30분쯤 귀가하였더니 집안이 흐트러진 채 약 500만원 정도의 귀중품과 현금 등을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용의자의 특징을 지명수배하여 라호만씨(혹은 김모씨 혹은 00씨)를 체포한 후 조사하였다. 라호만씨(혹은 김모씨 혹은 00씨)는 절도를 시인하였고 불구속으로 조사받은 후 귀가하였다.

사기범죄 스크립트

동남아 노동자 라호만씨(혹은 노동자 김모씨 혹은 00씨)(남, 29세)는 어제 밤 안산시에 있는 그의 집에서 사기죄로 체포되었다. 그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그는 동남아 노동자 동료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동료를 취직시켜 주지 않고 취업알선비로 받은 돈을 다 써버렸다. 라호만씨(혹은 김모씨 혹은 00씨)의 동료는 그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며칠전부터 잠복하던 중 집으로 들어가는 라호만씨(혹은 김모씨 혹은 00씨)를 체포하였다.

종속측정

조작 점검

범죄유형(절도 대 사기)과 인종특성(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의 스크립트를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평가하였다. 인종특성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에 4개의 인종특성(1=한국인, 2=동남아인, 3=흑인, 4=유럽인)중에 맞는 인물을 고르라고 하였다. 범죄유형에서는 스크립트에 나타난 범죄행동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5개의 범죄유형(1=사기, 2=폭행, 3=절도, 4=횡령, 5=살인)중에 하나를 골라 체크하도록 하였다.

귀인(내부, 지속적)

범죄행동의 원인에 대해 내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 지를 묻는 문항과 지속적,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3개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은 1) 귀하는 위 사람의 범죄 행동이 얼마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2) 귀하는 위 사람의 범죄 행동이 얼마나 안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3) 귀하는 위 사람의 범죄 행동이 얼마나 일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었다. 모든 문항은 9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9= 매우 그러함)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일시적 귀인을 묻는 3번 문항을 코딩 변환하여 안정적 귀인을 묻는 2번 문항과의 평균을 구해서 안정적 지속적 귀인 평가 점수로 삼았다(Cronbach α .64).

재범가능성

범죄행동을 한 사람의 재범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귀하는 위 사람이 동일한 범죄로 재범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이었다. 문항은 9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6= 매우 그러함)로 하였다.

수감기간

범죄행동을 한 사람을 구속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알아보았다. “귀하는 위 사람을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습니까? 이었다. 문항은 6점 척도(1=6개월, 2=12개월, 3=24개월, 4=36개월, 5=48개월, 6=5년이상)로 하였다. ‘구속기간’을 ‘수감기간’(1=6, 2=12, 3=24, 4=36, 5=48, 6=60)으로 코딩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조직적검

절도범죄 스크립트를 읽은 사람(N=154)중에서 2명은 다른 범죄행동 스크립트를 읽었다고 응답하였고 사기범죄 스크립트를 읽은 사람(N=128)중 6명은 다른 범죄행동 스크립트를 읽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동남아노동자 스크립트 조건을 읽은 사람(N=92)중 4명은 다른 인종조건을 읽었다고 응답하였고 한국인 스크립트 조건을 읽은 사람(N=93)중 9명은 다른 인종조건을 읽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21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귀인

귀인평가에 대한 2(범죄 유형 : 절도 대 사기) x 3(인종 특성 : 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 x 2(응답자 성별 : 남 대 여)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각 종속측정치 평균을 표 3에서 나타내었다. 성격적 요인에 대한 평가에서 범죄유형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F(1,252)=24.282, p<.01$), 응답자는 사기범죄($M=5.44$)를 절도범죄($M=4.22$)보다 더 성격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격적 요인에 대한 귀인에서 범죄유형과 인종특성의 이원상호작용($F(2,252)=2.023, p>.10$)

및 삼원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F(2,252)=1.870, p>.10$). 지속적·안정적 귀인에 대한 평가에서는 범죄유형의 주효과($F(1,252)=24.876, p<.01$)가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사기범죄($M=4.89$)를 절도범죄($M=3.94$)보다 더 지속적·안정적 행동으로 평가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종특성의 주효과($F(2,252)=3.634, p<.05$)가 나타났는데, 한국인($M=4.61$)조건과 통제조건($M=4.42$)에서 동남아노동자($M=4.08$)조건에서 보다 범죄행동을 더욱 지속적·안정적행동이라고 평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범죄유형과 인종특성의 이원상호작용($F(2,252)=1.951, p>.10$) 및 범죄유형, 인종특성 및 응답자성별의 삼원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F(2,252)=2.193, p>.10$).

다음, 각 귀인에 대한 2(범죄 유형 : 절도 대 사기) x 3(인종 특성 : 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 x 2(대학생 여부 : 대학생 대 일반인)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격적 요인 귀인에서 범죄유형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F(1,252)=27.557, p<.01$), 이는 응답자가 사기범죄($M=5.44$)를 절도범죄($M=4.22$)보다 더 성격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고 평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인종특성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F(2,252)=3.440, p<.05$), 이는 통제조건에서($M=5.07$) 동남아노동자조건($M=4.54$) 또는 한국인조건($M=4.66$)에서보다 더 성격적 요인에 의한 행동이라고 평가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범죄유형과 인종특성간 이원상호작용의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F(2,252)=2.670, p<.07$), 이는 응답자가 한국인($M=5.60$) 혹은 통제조건($M=5.90$)의 사기범죄를 동남아노동자($M=4.82$)의 경우보다 더 성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음을 보여준다($F(2,258)=3.679, p<.05$). 그러나 절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F(2,258)=1.284, p>.10$). 또한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F(2,252)=0.441, p>.10$). 이는 가설 1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지속적·안정적 귀인에 대한 평가에서 범죄유형의 주효과($F(1,252)=26.630, p<.01$)와 인종특성의 주효과($F(2,252)=4.431, p<.05$)가 나타났다. 즉, 응답자는 사기범죄($M=4.89$)를 절도범죄($M=3.94$)보다 더 지속적·안정적 행동으로 평가했고 한국인조건($M=4.61$)과 통제조건($M=4.42$)에서 동남아노동자조건($M=4.08$)에서보다 범죄를 더욱 지속적·안정적행동이라고 평가하였다. 범죄유형과 인종특성의 이원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범죄유형, 범죄자 인종 및 응답자(남 대 여, 대학생 대 일반인) 종속측정치 평균(표준편차)

범죄유형	동남아노동자						절 노 한국인						사 기 한국인						삼원상호작용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성격적요인	4.29 (1.96)	4.25 (1.95)	4.27 (1.93)	3.65 (1.82)	4.09 (1.82)	3.87 (1.82)	4.35 (1.62)	4.58 (2.06)	4.45 (1.81)	4.40 (1.90)	5.24 (1.58)	4.83 (1.77)	5.73 (1.49)	5.44 (1.93)	5.61 (1.67)	6.21 (1.93)	5.17 (2.21)	5.90 (2.05)	
지속적안정적행동	3.88 (1.68)	3.63 (1.32)	3.78 (1.55)	3.54 (1.23)	4.39 (1.22)	3.96 (1.29)	3.90 (1.28)	4.25 (1.27)	4.05 (1.28)	4.18 (1.32)	4.62 (1.14)	4.40 (1.24)	5.34 (1.41)	5.47 (1.89)	5.39 (1.61)	5.14 (1.75)	4.38 (1.85)	4.91 (1.79)	
재범가능성	5.43 (1.71)	5.06 (1.48)	5.30 (1.62)	4.22 (1.86)	5.36 (1.62)	4.78 (1.82)	5.19 (1.78)	5.42 (1.64)	5.29 (1.71)	4.65 (1.87)	5.81 (0.98)	5.24 (1.58)	5.64 (2.06)	5.69 (2.24)	5.66 (2.11)	6.41 (1.82)	5.00 (2.00)	6.00 (1.96)	**
수감기간	14.79 (14.74)	10.13 (6.09)	13.09 (12.43)	8.87 (4.38)	13.91 (8.95)	11.33 (7.37)	12.77 (11.97)	15.50 (11.45)	13.96 (11.72)	15.90 (14.86)	19.14 (9.02)	17.56 (12.18)	15.27 (14.78)	18.00 (12.59)	16.42 (13.79)	17.59 (14.60)	15.00 (8.68)	16.83 (13.09)	

범죄유형	동남아노동자						절 노 한국인						사 기 한국인						삼원상호작용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성격적요인	4.33 (2.08)	4.20 (1.79)	4.27 (1.93)	3.84 (1.57)	3.90 (2.13)	3.87 (1.82)	4.30 (1.86)	4.68 (1.76)	4.45 (1.81)	5.00 (1.72)	4.46 (1.90)	4.83 (1.77)	5.35 (1.87)	5.89 (1.41)	5.61 (1.67)	5.48 (1.97)	6.44 (2.06)	5.90 (2.05)	
지속적안정적행동	3.73 (1.78)	3.85 (1.26)	3.78 (1.55)	4.06 (1.33)	3.83 (1.26)	3.96 (1.29)	3.97 (1.19)	4.18 (1.42)	4.05 (1.28)	4.66 (1.18)	3.85 (1.21)	4.40 (1.24)	5.65 (1.69)	5.11 (1.50)	5.39 (1.61)	4.37 (1.44)	5.61 (1.98)	4.91 (1.79)	*
재범가능성	5.46 (1.56)	5.10 (1.71)	5.30 (1.62)	4.84 (1.68)	4.70 (2.03)	4.78 (1.82)	5.24 (1.46)	5.36 (2.06)	5.29 (1.71)	5.29 (1.51)	5.15 (1.77)	5.24 (1.58)	6.10 (1.83)	5.17 (2.33)	5.66 (2.11)	5.39 (1.80)	6.78 (1.93)	6.00 (1.96)	
수감기간	15.75 (15.71)	9.90 (5.60)	13.09 (12.43)	12.48 (8.47)	9.90 (5.60)	11.33 (7.37)	14.55 (11.23)	13.09 (12.65)	13.96 (11.72)	18.00 (10.20)	16.62 (16.09)	17.56 (12.18)	19.50 (13.04)	13.00 (14.15)	16.42 (13.79)	20.35 (13.98)	12.33 (10.59)	16.83 (13.09)	

응답자수 N=264 남자 153 여자 111
 대학생 153 일반인 111
 $p < .07^*$ $p < .01^{**}$
 삼원상호작용 범죄유형 x 인종특성 x 응답자특성(남 대 여, 대학생 대 일반인)

($F(2,252)=4.763, p>.10$). 그러나 지속적·안정적 귀인에 대해서 삼원상호작용의 경향성이 나타났다($F(2,252)=2.608, p<.08$). 이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인에 있어 범죄유형과 인종특성간 상호작용의 경향성이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F(2,105)=2.449, p<.10$). 이는 예상대로 일반인 응답자가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통제집단($M=5.61$) 혹은 한국인($M=5.11$)의 경우를 동남아노동자($M=3.85$)의 사기범죄보다 더욱 내부 지속원인으로 귀인하였지만($F(2,105)=5.635, p<.01$), 절도범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F(2,105)=0.394, p>.10$). 반면, 대학생에 있어서는 범죄유형과 인종특성간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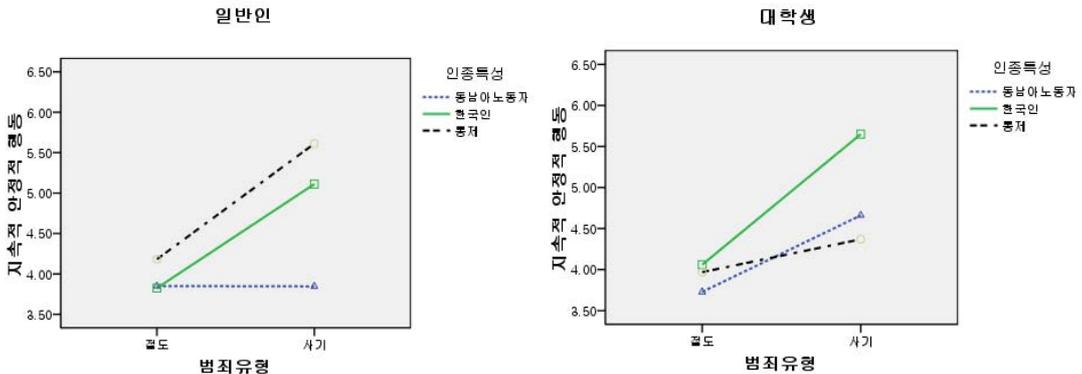


그림 4. 지속적·안정적 행동에 대한 범죄유형 범죄자인종 및 대학생·일반인별 삼원상호작용

($F(2,147)=2.138, p>.10$). 이는 또한 가설 1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재범가능성

재범가능성에 대한 2(범죄 유형 : 절도 대 사기) x 3(인종 특성 : 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 x 2(응답자 성별 : 남 대 여)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유형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252)=3.466, p<.06$). 즉 응답자는 사기범죄($M=5.63$)를 절도범죄($M=5.13$)보다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범죄유형, 인종특성, 응답자성별의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났다($F(2,252)=4.703, p<.01$).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응답자의 경우 범죄유형과 인종특성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F(2,147)=5.210, p<.01$), 이는 남자응답자는 동남아노동자($M=5.43$) 혹은 통제조건($M=5.19$)에서의 절도범죄를 한국인($M=4.22$)의 절도 범죄보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음을 나타내었다($F(2,147)=3.008, p<.05$). 반면에 사기범죄의 경우, 남자응답자는 한국인의 사기범죄($M=5.64$)나 통제집단($M=6.41$)의 경우를 동남아노동자의 사기범죄($M=4.65$)보다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F(2,147)=5.439, p<.01$). 여자응답자의 경우는 범죄유형과 인종특성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F(2,105)=1.064, p>.10$).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재범가능성에 대한 2(범죄 유형 : 절도 대 사기) x 3(인종 특성 : 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 x 2(

학생 여부 : 대학생 대 일반인)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유형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2,252)=5.479, p<.05$). 이는 응답자가 사기범죄($M=5.63$)를 절도범죄($M=5.13$)보다 더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범죄유형과 인종특성의 이원상호작용($F(2,252)=1.645, p>.10$) 및 삼원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F(2,252)=1.794, p>.10$).

수감기간

수감기간에 대한 2(범죄 유형 : 절도 대 사기) x 3(인종 특성 : 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 x 2(응답자 성별 : 남 대 여)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유형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252)=7.567, p<.01$). 이는 응답자가 사기범죄($M=16.95$ 개월)를 절도범죄($M=12.87$ 개월)보다 더 길게 수감해야 한다고 평가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인종특성의 주효과($F(2,252)=0.238, p>.10$), 응답자성별의 주효과($F(1,252)=0.512, p>.10$), 인종특성과 범죄유형의 이원상호작용($F(2,252)=0.443, p>.10$), 그리고 삼원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2,252)=1.754, p>.10$).

수감기간에 대한 2(범죄 유형 : 절도 대 사기) x 3(인종 특성 : 동남아노동자 대 한국인 대 통제) x 2(대학생 여부 : 대학생 대 일반인)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유형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252)=7.351, p<.01$). 이는 응답자가 사기범죄($M=16.95$ 개월)를 절도범죄($M=12.87$ 개월)보다 더 길게 수감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학생여부에 따라 수감기간의 주효과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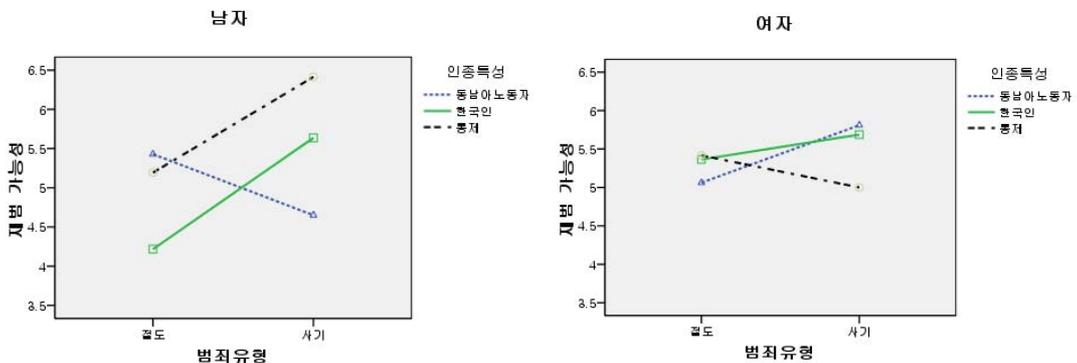


그림 5. 재범가능성에 대한 범죄유형 범죄자인종 및 응답자성별 삼원상호작용

표 4. 귀인(성격적요인, 지속안정적행동요인), 재범가능성 및 수감기간 판단간의 상관관계

	1	2	3	4
1. 성격적요인	-			
2. 지속적안정적행동	.46**	-		
3. 재범가능성	.30**	.44**	-	
4. 수감기간	.22**	.21**	.32**	-

** $p < .01$.

타났는데($F(1,252)=8.393, p<.01$), 이는 대학생응답자($M=16.55$ 개월)는 일반인응답자($M=12.22$ 개월)보다 수감기간을 더 길게 평가했다. 그러나 인종특성의 주효과($F(2,252)=0.367, p>.10$), 범죄유형과 인종특성의 이원상호작용($F(2,252)=0.281, p>.10$), 그리고 삼원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F(2,252)=1.238, p>.10$).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

귀인(성격 귀인, 지속안정적 요인 귀인), 재범가능성 및 수감기간 판단간의 상관관계가 표4에 나타나 있다.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예상대로 성격요인 귀인은 지속적안정적 요인 귀인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r=.46$)를 나타내었다. 또한 수감기간 판단은 예상대로 재범가능성 판단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32$)을 보였고 또한 성격적 요인 귀인 점수($r=.22$)나 지속안정적 요인 귀인 점수($r=.2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록 수감기간 변인에 있어 기대했던 범죄유형 x 인종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측정의 의도한 의미를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범가능성 판단도 성격 귀인($r=.30$)과 지속안정적요인귀인($r=.44$)과 각각 정적 상관을 보여, 본 연구의 이론적 설명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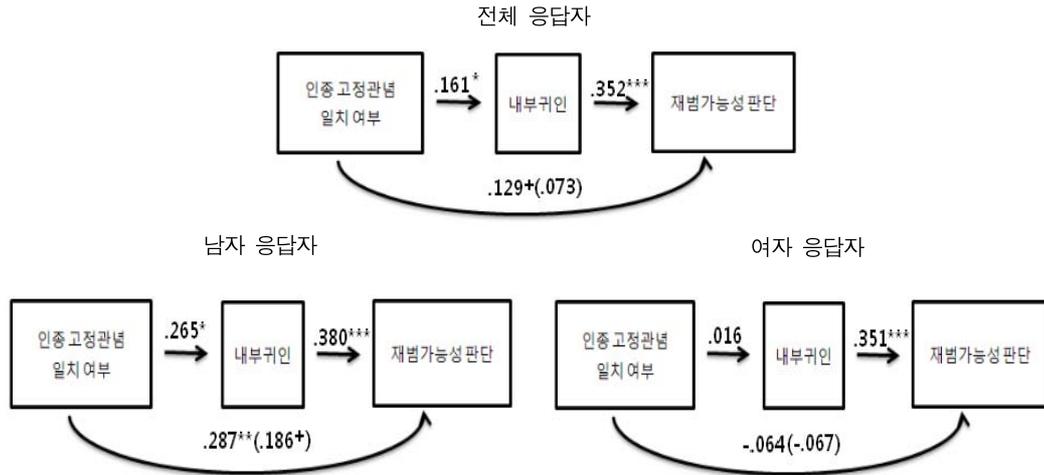
매개분석

마지막으로, 범죄행동의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가 범죄관련 판단(즉, 여기서는 재범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에 대한 해석(즉, 내부귀인¹⁾)이 매개하는지를 알기

1) 성격요인과 지속적안정적 요인을 합하여 평균점수로 분석했다.

위해 경로 분석(Baron & Kenny, 1986)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전체 응답자, 남자 및 여자 별로 분석하여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분석 결과 우선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가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beta=.129, p<.09$). 이는 범죄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인종고정관념 일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즉, 동남아 노동자의 절도범죄를 한국인의 절도범죄보다, 혹은 한국인의 사기범죄를 동남아 노동자의 사기범죄보다)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다음, 고정관념일치 여부가 내부귀인을 예측하는 효과도 유의미했고($\beta=.161, p<.05$), 또한 내부귀인이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효과도 유의미했다($\beta=.352, p<.00$). 마지막으로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에 따른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내부귀인의 매개효과를 통제했을 때 그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Sobel test를 한 결과, 그 효과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beta=.073, p>.10; z=1.92, p<.05$). 요약하면, 전체 응답자에서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에 따라 범죄행동을 내부귀인하여 이것이 재범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내부귀인평가가 매개변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남자응답자와 여자응답자를 구분하여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에 따라 대상의 행동을 해석하고(즉, 내부귀인) 또한 이러한 해석이 재범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대했던 대로 그림 6에서 보듯이 남자응답자에서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에 따라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287, p<.00$). 이는 남자응답자는 범죄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인종고정관념 일치 범죄에 대해서(즉, 동남아 노동자의 절도범죄를 한국인의 절도범죄보다, 반면에 한국인의 사기범죄를 동



*** $p < .001$, ** $p < .01$, * $p < .05$, + $p < .09$

그림 6. 고정관념일치여부(범죄자 인종과 범죄행동)가 내부귀인을 매개로하여 재범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매개모형

남아 노동자의 사기범죄보다)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보다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한 것이다.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가 내부귀인을 예측하는 효과도 유의미했으며($\beta=.265, p < .01$), 내부귀인이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효과도 유의미했다($\beta=.380, p < .00$). 마지막으로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가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내부귀인의 매개효과를 통제했을 때 그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Sobel test를 한 결과, 그 효과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86, p < .06$; $z=2.17, p < .05$). 반면에, 그림 6에서 보듯이 여자응답자의 경우에는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에 따라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beta=-.064, p > .10$). 또한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가 내부귀인을 예측하는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16, p > .10$). 그러나 내부귀인이 재범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351, p < .00$). 이는 여자 응답자에 있어서는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가 재범가능성 판단을 예측하는 데 있어 내부귀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beta=-.067, p > .10$; $z=.32, p > .10$). 요약하면, 남자응답자는 인종고정관념일치 여부에 따라 범죄행동을 다르게 귀인하여 이것이 재범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매개변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

자응답자에 있어서는 범죄 행동의 인종고정관념 일치여부가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귀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연구2의 결과, 사람들은 한국인의 사기 범죄를 동남아노동자의 사기 범죄보다 더욱 성격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였고 또한 적어도 일반인은 한국인의 사기 범죄(즉, 한국인 고정관념적 범죄)가 동남아노동자의 동일 범죄보다 더욱 지속·안정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재범가능성 지각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남자들은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한국인이 저질렀을 경우에 동남아노동자가 저질렀을 경우보다 더욱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였고, 반면 절도범죄의 경우에는 동남아노동자가 저질렀을 때 한국인의 동일 범죄에 대해서보다 더욱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상했던 대로 내부, 지속귀인, 재범가능성, 그리고 수감기간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또한 특히 남자응답자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범죄행동이 인종고정관념과 일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행동의 재범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인종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범죄를 그렇지 않은 범죄보다 더욱 내부귀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통제 집단의 결과가 흥미롭다. 즉, 사기범죄에 대한 내부지속원인 귀인이나 성격귀인 그리고 재범가능성 판단 결과는 통제집단의 결과가 한국인의 사기범죄에 대한 결과와 더 비슷하게 나타났고 동남아외국인의 사기범죄에 대한 결과와는 달랐다. 반면 절도범에 대한 재범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통제집단의 경우 동남아외국인 범죄자의 경우와 더 비슷하게 판단하여 한국인 절도 범죄자의 경우보다 더 높게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조건의 참여자는 가해자 인종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범죄행위에 대한 인종 고정관념에 의해 사기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범죄자를 한국인으로 가정하고 절도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동남아 노동자로 가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2의 대학생 응답자중 남성의 비율이 45%였으나 일반인 응답자는 남성의 비율이 76%가 되어, 특히 사기범죄에 대한 지속 안정요인 귀인에 있어서 일반인에 있어서만 예상한 형태의 귀인이 나타났고 대학생에서는 그렇지 않은 효과는 일반인 응답자가 대부분 남성이었다는 사실에 의해 그 해석이 애매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동일귀인에 있어 성별 변인은 일반인여부 효과의 경우와 달리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일반인 응답자에서 나타난 결과가 이들 대부분이 남성이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2에서 나타난 결과 -특히 재범가능성에 있어 인종고정관념 일치 범죄(즉, 동남아노동자 범죄-절도, 한국인 범죄-사기)를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크립트의 특성에 의해 그 해석이 제한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일상생활의 장면과 보다 비슷하도록 만들기 위해 절도 스크립트는 동남아 노동자 혹은 한국 사람이 한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하는 장면으로 기술하였고, 이에 반해 사기 스크립트는 한국인 혹은 동남아 노동자가 동남아인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절도 스크립트는 피해자가 한국인이었고, 반면에 사기 스크립트에서는 피해자가 동남아 노동자였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 결과는 동남아 노동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혹은 한국인이 동남아노동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즉, 한국인이 한국

인을 대상으로 절도를 하거나 혹은 동남아노동자가 동남아노동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한 경우)보다 재범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안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인종고정관념 일치범죄 여부에 의해 재범가능성을 다르게 지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건 사람들이 외집단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내집단을 대상으로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보다 재범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세 가지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론적 과정에 의한 설명보다 더 유보적이다. 첫째, 본 연구 결과가 외집단에 대한 범죄를 보다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결과를 지지해 주는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보적이다. 둘째,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본 연구에 포함된 통제집단(즉, 인종을 지적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는 본 연구 결과가 인종고정관념의 영향 과정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을 보다 지지해 주고 있다. 즉, 통제집단에 있어 사기범죄에 대한 내부지속원인 귀인이나 성격귀인 그리고 재범가능성 판단 결과는 한국인의 사기범죄에 대한 결과와 더 비슷하게 나타났고 동남아외국인의 사기범죄에 대한 결과와는 달랐다. 반면 절도범에 대한 재범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통제집단의 경우 동남아외국인 범죄자의 경우와 더 비슷하게 판단하여 한국인 절도 범죄자의 경우보다 더 높게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본 연구에서 기술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이름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한국인 범죄자라고 기대하였고, 한편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 이름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동남아노동자라고 가정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귀인과 재범가능성 판단에 있어 나타난 통제집단에 있어서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가 본 연구에서 상정한대로 인종고정관념의 영향 과정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라고 보는 설명이, 외집단의 범죄를 더욱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관점보다 더 유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에 의한 기대가 일으키는 효과라고 보는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과정이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스크립트 작성 시, 범죄자 인종뿐만 아니라 피해자 인종도 변화시켜 이러한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 논의

연구 1에서 예상했듯이, 응답자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혹은 남성, 지위가 낮은 사람, 도시, 가난한 사람, 서울수도권)의 강도 범죄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혹은 여성, 지위가 높은 사람, 농촌, 부자 혹은 중산층, 지방)의 강도범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지각했는데 이러한 평가경향은 다른 범죄(살인, 폭력, 절도, 조직폭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지각이 여자응답자에서 남자응답자에서보다, 또한 대학생에서 일반인에서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기와 횡령범죄에서는 다른 패턴이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 부자 혹은 중산층)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혹은 지위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 더 이 범죄들을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지각했는데, 이러한 지각이 여자응답자에 있어 남자응답자보다 그리고 대학생에서 일반인에서보다 더욱 뚜렷하였다. 성폭행 범죄는 지위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지각의 차이가 없었다. 인종대상의 범주특성에 대한 지각에서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응답자 혹은 일반인응답자는 절도범죄에 대해 동남아노동자가 한국인보다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반해, 여자응답자 혹은 대학생응답자는 인종의 차이가 없다고 지각했다. 이와는 달리 응답자들은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동남아노동자보다 더 빈번히 저지른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자의 특성을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우리나라사람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공유하는 특정한 신념 혹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 1은 비록 전국적 조사가 아니었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확인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범죄(자)에 대한 지각과 우리나라의 실제 범죄(자)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6년 우리나라의 범죄현황을 알아보았다. 2006년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829,211건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죄건수가(절도, 사기, 횡령, 배임등) 전체범죄발생건수 중 가장 높은 44.7%이며 다음으로 강력범죄272,196건(26.7%)로 나타났다. 2006년도 재산범죄의 죄명별 발생현황을 보면 사기가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전체범죄자중 여성범죄자는15.6%이며 여성 범죄자의 주요 죄명을 살펴보면 사기가(22.7%) 가장 많다. 2006년도 강력범죄의 죄명별 발생현황을 보면 강간(성폭력 포함)이 13,57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도 4,684건, 방화 1,685건, 살인 1,064건의 순서로 발생했다. 강력범죄의 발생지역은 강간(성폭력 포함)이 대도시(46.2%)와 중소도시(45.2%)로 도시이외 지역(8.6%)에서 발생한 것 보다 매우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는 대도시(47.5%), 중소도시(44.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살인은 대도시(43.1%), 중소도시(44.4%), 그 다음 도시이외 지역(12.5%)의 비율로 발생했다. 2006년도 강력범죄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살인범은 중학교 이하 학력(35%)이 가장 많고 강도범은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46.2%)가 가장 많다. 강간범(성폭력 포함)은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34.6%)가 가장 많다. 2006년도 외국인형범범중 절도(7.1%)가 가장 많다(범죄백서, 2008).

따라서 연구 1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범죄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지각이 우리나라 실제 범죄 발생과 대체로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사람들은 모든 범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지각했는데 실제로도 전체범죄자중 남성범죄자가 여성범죄자보다 많았다. 또한 사람들의 기대와 일치하게 강력범죄 발생은 도시지역이 도시이외 지역에서보다 많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강력 범죄자의 학력은 중,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사람들의 기대와 어느 정도 일치하였

다. 그러나 인종에 따른 범죄 지각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절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서 한국인의 범죄가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현실과는 다른 고정관념이 나타났다. 즉, 남자 혹은 일반인은 절도범죄는 동남아노동자($M=2.44$)가 한국인($M=2.37$)보다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이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왜곡된 고정관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사기 범죄(한국인 $M=2.66$; 동남아노동자 $M=1.76$) 및 그 외의 범죄에서는 한국인에서 동남아노동자에서보다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지각하였는데, 이는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실제 범죄 행태와 유사하게 범죄에 대해 지각하거나 혹은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연구2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이 동일한 범죄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한 개인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행동이라면 동일한 판결을 받아야 할텐데 행위자가 어떠한 인구학적 집단에 소속해 있는가에 따라 또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이를 개인에 대한 판단이나 행위의 해석에 적용시켜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2의 결과는 실제로 이러한 과정이 현실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Bodenhausen 등(1985)과 Gordon 등(1988)이 제안한 모델에 따라 특정범죄(한국인 고정관념적 사기범죄와 동남아노동자 고정관념적 절도범죄)에 대해 인종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정관념 일치 범죄는 불일치범죄에 비해 더욱 지속적인 행동으로 해석하여 그에 따라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각하고 더 엄격한 판결을 받는지를 검토하였다. 예상대로 성격적 요인에 대한 귀인에서 범죄유형과 인종특성의 이원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한국인 혹은 통제조건의 사기범죄를 동남아노동자의 경우보다 더 성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절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설 1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일반인응답자에 있어서 범죄유형과 인종특성간 상호작용의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통제집단 혹은 한국인의 사기범죄를 동남아노동자의 사기범죄보

다 더욱 안정·지속원인으로 귀인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절도범죄에서는 인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응답자에서는 범죄유형과 인종특성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도 가설 1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재범가능성 평가를 검토한 결과, 남자응답자는 예상대로 동남아노동자 혹은 통제조건에서의 절도범죄를 한국인의 절도범죄보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사기범죄의 경우, 남자응답자는 한국인의 사기범죄나 통제집단의 경우를 동남아노동자의 사기범죄보다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여자응답자의 경우는 범죄유형과 인종특성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연구 2의 실험결과는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2의 결과, 사람들은 한국인 사기범죄에 대해 동남아노동자 혹은 통제집단보다 더욱 내부 지속원인으로 귀인하였으나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동남아노동자의 절도를 한국인의 절도의 경우보다 더 지속·안정적 원인으로 귀인하지 않은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본 연구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으나, 한가지 가능한 이유는 연구1에서 비록 사람들이 절도범죄를 한국인보다는 동남아노동자의 특성적 범죄라고 유의미한 정도로 지각하였으나 그 평가 점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종에 따른 절도 범죄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대학생과 여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남자와 일반인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즉, 절도범죄를 동남아노동자의 전형적 범죄로 보는 시각은 한정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고 그 강도도 그리 크지 않아 그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람들은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뚜렷하게 한국인의 전형적 범죄라고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스크립트를 읽고 그에 기술된 행동에 대한 귀인판단을 할 때 절도 범죄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보다 미약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범가능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남자 피험자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나타났다. 즉, 절도 범죄의 경우에는 동남아노동자나 통제집단의 경우에 한국인의 절도에 대해서보다 더욱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고, 반면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나 통제집단의 경우 동남아노동자 범죄의 경우에 비해 더욱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재범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절도범죄에 대해서도 예상했던 인종효과가 나타났음을 나타낸다. 절도범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인종 효과가 이와 같이 판단의 유형에 따라 비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절도에 대한 인종별 기대 혹은 고정관념 자체가 사기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보다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2의 결과는 귀인과 재범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가설대로 인종과 범죄유형 및 응답자유형의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나 기대와는 달리 수감기간에 대한 유의미한 상호작용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감기간 평가 척도의 범위(즉, 6개월-5년이상)나 그 간격이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수감기간 판단에 있어 사람들에게 개방형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마다 그 응답범위나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6점 척도상에서(1= 6개월, 6= 5년 이상)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범위나 간격이 사람들의 생각의 범위와 달랐거나 혹은 사람들의 판단을 측정하는 데 있어 적합하고 세밀한 척도 간격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수감기간 판단은 다른 종속 측정들과 예상한 방향대로의 상관(예를 들어, 성격적 요인 귀인 $r=.22, p<.01$; 지속안정 행동 $r=.21, p<.01$; 재범가능성 $r=.32, p<.01$)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비록 이 측정이 사람들의 범죄판단에 대한 정확한 척도는 되지 못하였더라도 그 의미나 방향성은 기대된 대로였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구속기간 판단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범죄자의 집단 특성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이 범죄 행동에 대한 성격 혹은 지속·안정적 행동 귀인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재범가능성과 수감기간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과정을 가정하였다. 즉, 동일한 범죄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보다 더욱 내부지속 원인 귀인을 하고 그에 따라 재범가능성과 수감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

는 가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 특히 일반인들은 인종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내부 안정적 귀인을 하였고, 재범가능성을 더욱 높게 지각하였으며(특히 남자들), 또한 상관 분석 결과도 범죄에 대한 내부 안정 귀인이 재범가능성과 수감기간 판단과 정적으로 상관되었다는 것을 보여 가설이 일부 지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더 나아가서 매개분석을 통해, 적어도 남자참여자들이 있어서는 범죄행위가 인종고정관념과 일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내부 귀인을 하고 이에 따라 재범가능성을 더욱 높게 지각한다는 과정을 보여 가설 3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귀인에 의한 매개과정에 대한 분석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본 연구가 이전 연구들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미루어보아 사람들은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자의 집단 특성을 다르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또한 이러한 범죄자의 집단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나라의 실제 범죄발생 현황과 비슷하더라도 이러한 고정관념을 개인에 적용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개인의 범죄를 집단에 대해 일반화 시키는 위험이 있는데, 연구 2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종관련 고정관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의 현실적 의미로는 판사 혹은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들이 가진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재판과정에서 편향된 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노동자의 절도 범죄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판사 혹은 배심원이 판결을 할 경우 더 엄격한 판결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본 연구에서와는 다른 측면- 예를 들어 범죄유형별 범죄자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러한 고정관념의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혜숙 (1993).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53-70.
- 방희정, 조혜자 (2006). 암묵적인 자기 범주화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245-265.
- 범죄백서 (2008). 법무연수원. *Associated Press*. (1986).
- Blair, I. V., Judd, C. M., & Fallman, J. L. (2004). The automaticity of race and Afrocentric facial features in social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763-778.
- Bodenhausen, G. V., & Wyer, R. S. (1985). Effects of stereotypes o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267-282.
- Bodenhausen, G. V., & Lichtenstein, M. (1987). Social stereotypes and information -processing strategies: The impact of task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71-880.
- Bodenhausen, G. V. (1988). Stereotypic biases in social decision making and memory: Testing process models of stereotype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726-737.
- Crocker, J., Hannah, D. B., & Weber, R. (1983). Person memory and causal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55-66.
- Eberhardt, J. L., Davies, P. G., Purdie-Vaughns, V. J., & Johnson, S. L. (2006). Looking deathworthy: Perceived stereotypicality of black defendants predicts capital-sentencing outcome. *Psychological Science*, 17(5) 383-386.
- Fiske, S. T.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Z. Lin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357-414). New York : McGraw-Hill.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 McGraw-Hill.
- Gordon, R. A., Bindrim, T. A., McNicholas, M. L., & Walden, T. L.(1988). Perceptions of blue-collar and white-collar crime: The effect of defendant race on simulated juror decis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8, 191-197.
- Hamilton, D. L., & Sherman. J. W. (1994). "Stereotypes." In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2nd ed.) R.S. Wyer, Jr. and T.K. Srull. Hillsdale, NJ: Erlbaum.
- Hamilton, D. L., & Troiler, T. K. (1986).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An overview of the cognitive approach." In J. Dovidio & SI 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New York: Academic Press.
- Hoffman, E. (1980). Perceived severity and justifiability of a deviant act and their relationship to suggested sanct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1, 787-791.
- Hoffman, E. (1981). Social class correlates of perceived offender typicality. *Psychological Reports*, 49, 347-350.
- Pogrebin, M. R., Poole, E. D., & Regoli, R. M. (1986). Stealing money: An assessment of bank embezzler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4, 481-490.
- Sagar, H. A., & Schofield, J. W. (1980). Racial and behavioral cues in black and white children's perceptions of ambiguously aggressive a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90-598.

Stereotypes of Criminals and Judgement

Hee Chan Park Hai-Sook Kim
Dongguk University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stereotypes of criminals of Koreans(Study 1) and their effect on judgement regarding the crime(Study 2). Undergraduate students(N=271) and adults(N=248) participated in Study 1 which was design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homicide, violence, sexual offense, robbery, larceny, fraud, embezzlement and gang) in terms of the category of sex, education, social standing, urban or suburban, race, bracket and region.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people perceived each crime was related to specific pattern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Study 2,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tereotypes of criminals on the judgement of the criminal acts. In half of the cases, the target's criminal act(theft or fraud) was stereotypic of the target's ethnic group(conveyed through his name), Koreans or Southeast Asians immigrants, and in the other half cases it was not. After reading the script describing either fraud or theft, subjects judged the causes of the crime, the likelihood that the crime would recur and recommended punishment for the offense.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Korean fraud (i.e., Korean stereotypic crime) in comparison with the fraud committed by Southeast Asians was attributed more to stable and persistent factors. Furthermore, male participants perceived the Southeast Asian theft as being more likely to repeat the crime than Korean theft while they perceived Korean swindler more likely to repeat the crime than the Southeast Asian swindler, as expected. Finally, the effect of the stereotype-consistency of the crime on the judgment of recidivism was mediated by the degree of internal attribution. We discussed about the theoretical as well a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Keywords : crime, stereotypes of criminals,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race, judgement.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9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4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5월 6일

